

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[별지 제3호의2서식] <개정 2016.2.3.>

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4일		
청구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(전화번호:) (휴대전화번호:) (전자우편주소:)			
	근무기간 및 퇴직일 년 월 일 ~ 년 월 일			①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		
	②소(訴)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		③판결등이 있는 날		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원	
	⑤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(사업주지급금, 퇴직연금, 이행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등의 금액) 원					
	⑥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.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: 원 나. 최종 3년간의 퇴직금: 원					
	⑦지급받아야 할 채당금 원					
⑧임금회	입금은행	예금주	계좌번호			
⑨대상 사업주	사업장명		사업자등록번호			
	대표자성명		소재지			

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 및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

청구인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⑩ 첨부서류	1.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, 명령,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,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.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.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.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.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-----	--	--------

처 리	선람		결 재	담당	차장	부장	본부장(지사장)
	조회확인						
	지급할 채당금액						
	입력확인						

공지사항

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
본인은 귀 기관이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23조제1항제6호·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「법률구조법」 제8조에 따른 대한 법률구조공단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소액채당금 지급 등의 처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 "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 발급번호"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말합니다.
- ② "소(訴) 제기일 또는 신청 등을 한 날"은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장을 제출하거나 신청 등을 한 날을 말합니다.
- ③ "판결등이 있는 날"은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, 지급명령, 소송상 화해 및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,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날을 말합니다.
- ④ "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"은 법원에서 판결등을 통하여 인정되어 확정된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.
- ⑤ "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"은 법원에서 확정된 체불 임금등 중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등이나 퇴직연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.
- ⑥란의 가. "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"은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,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말합니다.
- ⑥란의 나. "최종 3년간의 퇴직금"은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,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로부터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.
- ⑦ "지급받아야 할 체당금"은 ⑥란의 "가" 와 "나"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. 다만, 합계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시한 그 금액의 상한이 지급받게 될 체당금의 금액이 됩니다.
- ⑧ "임금의뢰"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소액채당금을 지급받기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.
- ⑨ "대상사업주"란에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의 명칭, 소재지,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※ 소액채당금 지급청구서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		문서뷰어	
은행 (예금계좌)	◀		결재 (본부장·지사장)